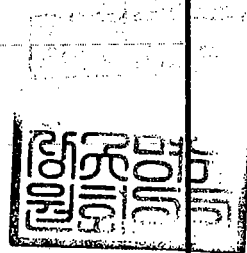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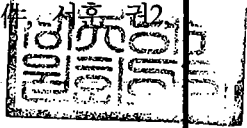
성 명	한 글	이 병 무	일본명	
	한 자	李秉武	이 병 무	
출생 연월일	1864년 1월 1일		사망 연월일	1926년 12월 6일
	京城府 弼雲洞 278			
주요 경력	1904년 이전			
	1864. 1. 1	출생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쪽, 464쪽, 755쪽)		
	1884. 6.10	무과 급제 (같은 자료; 조선귀족약력, 81쪽)		
	1888. 1. 5	參下 宣傳官으로 부임 (같은 자료)		
	1889. 6.	鍊武公院에서 수학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쪽, 464쪽)		
	1889.12. 5	親軍 統衛營 隊官에 발탁 (같은 자료)		
	1891. 1.20	훈련원 主簿로 이임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쪽, 464쪽, 755쪽)		
	1891. 6. 8	參上 宣傳官으로 부임 (같은 자료)		
	1893.12.11	承傳 宣傳官으로 부임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쪽, 755쪽)		
	1894. 7. 9	親軍 壯衛營 右隊 副領官으로 부임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쪽, 464쪽, 755쪽)		
	1894. 9. 6	보빙대사 義和君의 隨員으로 日本에 파견됨 (같은 자료; 조선귀족약력, 82쪽)		
	1894.10. 2	일본 陸軍 敎導團 입학 (같은 자료)		



1895. 5. 3~1896. 3.10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수학 (같은 자료)
1896. 3.20	귀국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쪽, 464쪽)
1896. 4.27	육군 보병 正尉가 되고 무관학교 교관을 겸임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쪽, 464쪽, 755쪽)
1897. 6.19	육군 보병 參領으로 승진 (같은 자료)
1898. 7.2	무관학교 敎頭로 승진 (관보, 1898년 7월 5일)
1899. 6.21	북청지방대 대대장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쪽, 464쪽, 755쪽)
1900. 7.22	북청진위대대 대대장 (같은 자료)
1900. 7.28~1900.10.15	진위 제5연대 제2대대 대대장으로 移補 (같은 자료)
1900.10.	일본에 있는 망명자와 연락한 혐의로 免官되어 2 년간 감옥소에 미결수로서 구금됨 (조선귀족약력, 82쪽)
1902. 1. 3~1904. 2.19	군산지역으로 유배됨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쪽, 464쪽, 755쪽; 조선귀 족열전, 124쪽)
1904년 ~ 1945년	
1904. 6. 7	육군 보병 參領 정3품으로 復官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쪽, 464쪽, 755쪽; 조선귀 족열전, 124쪽)
1904. 7. 7	육군무관학교 교관으로 補任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쪽, 464쪽, 755쪽)
1904. 8.26	군제 의정관에 피명 (같은 자료)
1904. 9.21	육군 보병 副領으로 승진 (관보, 1904년 9월 30일 호외)
1904. 9.29	육군무관학교장으로 부임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쪽, 464쪽, 755쪽)



1904. 9.29~1905. 2.21	유년학교장 겸임 (관보, 1904년 9월 30일 호외, 1905년 2월 24일)
1905. 4.13	육군 보병 正領으로 승진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5쪽)
1905. 7.22	군부 교육국장 補任 (대한제국관원이력서, 464쪽, 755쪽)
1905.12.13	육군 參將으로 승진 (고종실록, 1905년 12월 13일)
1906. 1.10	일본 보병대사의 隨員으로 임명됨 (고종실록, 1906년 1월 10일)
1906. 1.15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3등 팔괘장을 받음 (고종실록, 1906년 1월 15일)
1906. 2.16~1906. 3. 4	大使 完順君의 隨員으로 일본에 체재함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쪽, 464쪽, 755쪽)
1906. 3. 1	일본 정부로부터 훈2등 瑞寶章을 받음 (韓國禮式院副卿金奎熙外七名敍勳ノ件, 서훈 권2, 外國人, 1906년)
1906.10.10	鎭衛 各隊 檢閱使로 임명됨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쪽, 464쪽, 755쪽)
1907. 5.22	육군 副將으로 승진하고 군부 대신에 임명됨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쪽, 755쪽)
1907. 7.18	고종 황제 강제퇴위과정에서 주도적 역할 (대한계년사 8권, 146~169쪽; 日韓外交資料集成 제6권[중], 607~617쪽;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0일)
1907. 7.24	정미조약[한일신협약] 및 한일협약 규정 실행에 관한 각서 조인 (고종실록, 1907년 7월 24일; 일한외교자료집성 제6권[중], 627~636쪽; 대한계년사, 8권 169~171쪽)
1907. 7. ~1907. 8.	한국군대 해산을 주도 (韓國駐劄軍韓國軍隊解散に關する件, 1907년 8월 2일, 密大日記 1907년; 憲兵司令部韓國軍隊解散に關する報告の件, 1907년 8월 7일, 密大日記 1907년)



1907. 7.29	임시 서리 시종무관장 겸임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쪽, 755쪽)
1907. 8	의병전쟁 진압을 지휘, 일본군에 협력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13일, 22일, 29일)
1907. 8.12	군법회의 판사장으로 임명받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2쪽, 755쪽)
1907. 9.28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2등 태극장을 받음 (관보, 3886호, 1907년 10월 2일)
1907.10.16	일본 황태자의 渡韓 당시 한국 황제의 칙사로서 영접 (중외일보, 1926년 12월 26일)
1907.10.18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旭日章을 받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5쪽)
1907.10.30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1등 태극장을 받음 (관보, 1907년 11월 2일)
1908.10. 5	일본 도쿄에 가서 10월 20일의 황태자-아우의 생일에 문안하고 오라는 명을 받음 (순종실록, 1908년 10월 5일) 일본육군 특별대연습에 陪觀함을 명 받음 (관보, 1908년 10월 8일)
1908.10.15~1908.11.29	일본 체류 (황성신문, 1908년 10월 15일, 12월 1일;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15일)
1909. 7.31	친위부장관으로 부임 (순종실록, 1909년 7월 31일)
1910. 8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참여 (韓國併合始末ノ件, 明治43년 11월 21일, 公文雜纂 第十九卷; 대한매일신보, 1910년 8월 26일)
1910. 8.26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大勳 李花大綬章을 받음 (순종실록, 1910년 8월 26일)
1910.10. 7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을 수작 (관보[일본내각], 1910년 10월 8일 ;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12일; 순종실록, 1910년 10월 7일)

1911. 1.13	일본 정부로부터 5만원의 은사공채 수령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 齋藤實文書 1926년; 매일신보, 1911년 1월 14일)
1911. 2. 1	이왕부(李王附) 무관에 임명 (조선총독부관보, 1911년 2월 7일)
1912.12. 7	일본 정부로부터 종4위에 서위됨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2월 12일)
1912. 8.1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陸軍歩兵大尉正七位勳五等功五級山田伊三郎外八 百二十五名へ韓國併合記念章授與ノ件, 1913년 3 월 29일, 韓國併合記念章裁可書 ; 관보[일본내각], 1913년 4월 22일 부록
1914.10.17	경성신사에 가서 예제에 참례 (순종실록, 1914년 10월 17일)
1914.12.28	조선총독부로부터 특별상여금 180원을 받음 (朝鮮將校副將男爵趙東潤外三十七名同上(各官廳高 等官賞與ノ件, 公文雜纂 第八卷 丙部 1914년 12월 28일)
1915.11. 2	일본 교토에 가서 다이쇼[大正]천황 즉위식에 참례 도쿄에 가서 관병식을 관람 (순종실록, 1915년 11월 2일)
1915.11.10	다이쇼[大正] 천황 즉위 시 일본 정부로부터 대례 기념장을 받음 (관보[일본내각], 1916년 12월 13일)
1916. 4. 3	짐무[神武]천황제 요배식에 참여 (순종실록, 1916년 4월 3일)
1917. 5.20	도쿄에 가서 왕세자의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참가 (순종실록, 1917년 5월 20일)
1917. 7.30	왜성대신사에서 메이지(明治)천황 5년 식년제 행 사에 참가 (순종실록, 1917년 7월 30일)
1917.10. 3	불교옹호회 제1회 역원회에서 고문으로 선출됨 (조선불교총보 제7호 48~49쪽, 1917년 11월 21일)
1920.	조선군인대우 개정의 칙령에 의해 부장을 고쳐 중장으로 임명

	(朝鮮軍人ヲ陸軍將校同相当官ニ任用等ニ關スル件ヲ定メ・明治四十四年勅令第三十六号朝鮮軍人ニ關スル件中ヲ改正ス, 公文類聚 제44편 제14권, 관직 13, 임면 1, 1920년)
1926.12. 6	사망 (동아일보, 1926년 12월 8일; 중의일보, 1926년 12월 8일)
1926.12. 8	일본 정부로부터 旭日桐花大綬章을 추서 받음 (조선총독부관보, 1926년 12월 15일)

조 사 내 용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호(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의병부대에 대한 공격

▶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13일.

“원주 진위대참령 홍우형 씨가 군대를 해산한 후에 사졸들의 울불한 모양을 보고 피화차로 상경하다가 여주 등지 인민들에게 단발한 사람이라고 잡혀서 무수히 곤경을 당하다가 애걸하고 간신히 면화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군대[군부대신의 약칭, 이하 동 - 작성자] 이병무씨를 본즉 군대의 말이 원주민이 폭동하였는데 해산한 병정이 합하여 그 형세가 대단 불안한 즉 영감이 아니면 진압할 수가 없으니 급히 내려가라고 권고하는 고로 홍씨가 부득이하여 재작일에 일즉 내려갔다더라.”

▶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22일.

“재작일 상오10시에 군부대신 이병무씨가 무슨 일이 있던지 장곡천[하세가와(長谷川) - 작성자] 대장을 심방하고 즉시 예궐하여 폐현하였는데 그 이유인즉 각 지방에 의병을 진압할 일이라더라.”

▶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29일.

“각 지방 의병을 진압하기 위하여 일본에 전보하고 군병 아사단 [2사단으로 추정-작성자] 청구하였다더니 군부대신 이병무씨가 일간에 일본으로 가서 청병한다는 말이 있다더라.”

2. <특별법> 제2조 6호(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정미7조약(한일신협약) 체결

(1) 고종황제 강제 양위 과정에 참여

▶ 『梅泉野錄』 권5, 정미년(1907) 광무11년;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3일.

“바야흐로 禪位의 일을 시작할 때에 伊藤博文은 각 부대 군사들이 변란을 일으킬까 걱정하여 일본군을 파견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군부대신 이병무가 본부에 전화하여 저들을 영접하도록 하니, 正尉 趙性根이 대답하기를, ‘자기나라의 군문에 다른 나라의 병사가 파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병무가 또 전화를 하여 ‘일본인의 명령인데 어찌하겠는가?’라고 말하니, 조성근이 크게 성을 내어, ‘일본 사람 있는 줄만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찌 군부를 맡는단 말인가?’라 하고, 주먹으로 전화통을 때려 부수고 일어났다.

이병무는 또 參領 林在德을 불러 말하기를, ‘일본헌병 70명이 방금 [1907년 7월 17일 밤-작성자] 대궐 밖에 도착하였으니 즉시 쥘문을 열어라’ 하였다. 임재덕이 말하기를, ‘칼을 차고 입궐하는 것은 국법에 금하는 것입니다. 어찌 일개 군부대신의 뜻으로 외국 병사를 마구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였다. 부대장 李漢用이 이병무의 지시를 받아 일본 헌병을 거느리고 돌입하니 임재덕은 막을 수 없었다. 이병무는 일본군을 사주하여, 임재덕은 끝내 믿을 수 없으니 그의 무장을 빼앗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임재덕은 일본군에 저항하여 말하기를, ‘우리 부대의 무장은 모두 황제의 칙명으로 나누어준 것인데, 어찌 외국 군대에게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였다. 일본인들 또한 그의 강직함에 감복하였다. 이병무는 제3대의 폭동을 수습하지 못한 것은 將官에게 죄가 있다고 구실을 만들어 임재덕을 법원에 구속하였다. 임재덕은 땅을 치며, ‘수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행동은 병사들의 충의에서 나온 것이거늘 장관은 유독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부르짖었다.”

▶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4일.

“삼작야에 황상폐하께옵서 전위하실 때에 각부대신이 누누이 주청하는데 이완용 씨와 송병준 씨는 불공한 설화로 무수히 어쩍하고 군대 이병무 씨는 심지어 칼을 차고 시립하였다더라.”

▶ 『관보』, 1907년 7월 19일 호외; 정교 저, 조광 편, 김우철 역, 『대한계년사』 8권, 소망출판, 2004, 149쪽.

“조서에 이르시기를,

오호라 짐이 열조의 대업을 받들어 이를 계승하고 지키기를 지금까지 44년이다. 여러 번 많은 난리를 겪으며 다스림이 뜻과 같지 않아 사람을 쓰는 것이 더러는 맞는 사람이 아니어서 소요와 거짓이 날로 심해지고 시행한 조치가 그 때의 사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많아 어려움과 근심이 한창 급해지게 되었으니 백성들의 곤궁함과 나라의 위기가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으니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깊은 물을 건너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 다행히 元良[황태자 - 작성자]을 믿고 의뢰함이 너그러운 도량과 재능은 하늘이 이루어 준 것이요 드높은 명망은 일찍 드러났다. 취침 때 문안하고 식사 때에 돌보아주는 겨를에 보탬이 크고 많았으니 정무를 시행하고 개선할 방책을 맡길 사람이 있게 되었다. 짐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늙어서 자리를 물려주는 것은 역대로 이미 스스로 행해져 오는 전례가 있고, 또한 우리 역대 왕조의 훌륭한 예법도 이어받아 행하는 것이 옳바르고 마땅한 일이다. 짐이 이제 군국대사를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명하노니 의식절차는 궁내부 장례원에서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光武十一年 七月 十八日

內閣總理大臣 勳二等	李完用
內部大臣	任善準
度支部大臣	高永喜
軍部大臣 陸軍副將 勳三等	李秉武
法部大臣	趙重應
學部大臣 勳三等	李載崑
農商工部大臣	宋秉峻

▶ 『관보』, 1907년 7월 22일 호외; 『대한계년사』 8권, 154~155쪽.

“조서에 이르시기를,

아, 너희 대소신민은 짐의 말을 똑똑이 들으라. 짐이 大朝[고종황제 - 작성자]의 분명한 명을 받들어 庶政을 대리하노라. 낡은 제도를 새롭게 하는 이때에 즈음하여 國是를 정하지 아니하고 時勢를 오해한다면 처음의 작은 차이로 忠逆을 가를 뿐 아니라 종사와 국가에 해를 끼침이 또한 예사롭지 않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근래에 이르러 혹자는 몹시 분하게 여긴다고 이르고, 혹자는 충의를 방자하여 소란과 거짓이 도처에서 요란하게 들리거늘 누차 勅諭를 내리셔서 진실된 마음을 펼쳐 보이셨으나 둔하게도 그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잘못을 고집하니 매우 측은함을 금할 수 없다. 아아 너희 백성들은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지내던 구습을 고집하지 말고 하늘의 때를 살피고, 세상의 일을 상고하여 세상 모든 나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리를 알맞게 하여 나라를 중흥시키고 번성하게 하는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시작할지니 너희 백성은 짐이 아니면 누구를 섬기며, 짐은 너희가 아니면 누구를 다스릴 것인가 너희 백성은 국시를 정하고 도리를 판별하여 다시 망동을 부리지 말지니 각각 그 생업을 편안케 하라. 이제부터 조정에서는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정사를 실행하고 민간에서는 산업을 번성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교육의 일을 연구하여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문명의 시대로 함께 올라 영원히 태평스러운 복을 누릴지니 아아 너희 백성들은 능히 짐의 뜻을 익히어 대업을 서로 협력하여 도울지어다. 아, 너희 백성들이여.

光武十一年 七月 二十一日

內閣總理大臣 勳二等 李完用

既承尊奉

大朝處分矣

태황제의 높이 받드는 의식 절차를 궁내부 장례원이 도감을 설치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光武十一年 七月 二十一日

內閣總理大臣 勳二等	李完用
內部大臣	任善準
度支部大臣	高永喜
軍部大臣 陸軍副將 勳三等	李秉武
法部大臣	趙重應
學部大臣 勳三等	李載崑
農商工部大臣	宋秉燮

▶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3일, 「론설 - 황태즈 대리 호신 스실」.

“서력 일천 구백 칠년 대한 강무 십일년 칠월 십팔일에 황제폐하께오서 조칙을 대리어서 황태자 전하로 하여금 군국대사를 대리하라 하오시니 황제폐하께오서 춘추가 높으시고 황태자께서도 춘추가 정성하신즉 이런 일이 옛적부터 여러 대왕의 집에서 임의 행한 전례가 많고 또한 대한 열성조에서도 여러 번 행하신 일이라 이로 말미암아 (중략) 국가의 무강한 복을 경축하여 대한 천지의 화기가 음음 하겠거늘 어찌하여 수일 사이에 공론이 비등하고 민심이 분격하여 (중략) 마침내 대궐문 앞에서 군도를 두르기도 하며 종로 위에서 포성이 부절하여 주검이 다수하고 유혈이 낭자하여 전쟁을 지냄과 다름이 없는 모양이니 이것은 웬일인고 (중략) 대한 황제의 위를 폐하고 세운다는 말이 일본사람 신문에 낭자 하더니 며칠이 못되어 한국 내각 대신이 비밀히 공의 하다가 여러 날 궐내에 들어가서 황제 성의에 축로되는 것을 불고하고 강박히 아뢰오되 폐하께오서 중시 거절하신다더니 필경은 칠월 십칠일 밤에 여러 대신이 일제히 궐내에 들어가고 이등통감도 소명을 인하여 폐현한 지라 그날 밤 네 시에 일본 병정과 일본정부 한 사람은 대청까지 올라간 일이 있다 하며 이윽고 조칙을 내리시매 여러 대신이 또 어떻게 아뢰었든지 원로 몇 사람이 소명을 받아 궐내에 들어간즉 여러 대신은 협실로 피하고 병정과 순사도 보지



못하겠고 대궐 안이 조용하더라. (중략) 이튿날 조칙이 반포되매 온 장안 백성들이 물 끓듯 하여 필경 피를 흘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중략) 이번 일이 만일 황제의 성의로 된 일이면 전국 백성이 다 춤을 추고 경축 할 터인데 이제 이같이 백성의 뜻이 분격하고 효상이 참담한 것은 이번 일이 외국 사람의 억제와 내각 대신의 강박히 청함으로 된 일시오 (중략) 어찌 놀랍지 아니리오 한국 대신으로 말 하겠다면 오늘날 이 거조가 외국 사람의 시키는 것을 좃아 황상을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사람은 누구뇨 총리대신 리완용, 내부대신 립선준, 법무대신 조중응, 탁지부대신 고영희, 군부대신 리병무, 학부대신 리재곤, 농상공부대신 송병준이라.”

▶ 『대한계년사』 8권, 146~159쪽, 「태자에게 명하여 나라의 일을 대리하게 하다」.
 “이 때 이완용 등이 날마다 伊藤博文에게 가서 보고 은밀히 논의했다. 7월 18일 오후 2시 총리대신 이완용이 내부대신 립선준, 탁지부대신 고영희, 군부대신 이병무, 법무대신 조중응, 학부대신 이재곤, 농상공부대신 송병준 등과 함께 다시 내각회의를 열었다. 4시에 일제히 대궐에 들어갔다. 황제는 여러 번 伊藤博文을 불렀다. (중략) 이완용 등은 7시 반부터 20시까지 황태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일에 대해 아뢰었다. 수옥헌 안에는 이완용 등 7명만이 있었고, 문 밖에는 일본 순서부리가 빈틈없이 지키며 막았다. 황제를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는 한 사람이라도 엄중히 막아서 통해 다닐 수 없었다. 황제가 허락하지 않자 이완용, 이병무, 송병준은 모두 다 그치며 요청했다. 황제는 어쩔 수 없어서 오전 3시에야 비로소 황태자에게 대리를 명령하는 조서를 내렸다. (중략) 7월 21일 (중략) 이완용 등 7명이 대궐로 들어가 황태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일에 대해 황제에게 아뢰었다. 황제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완용 등은 누누이 그 일을 아뢰었다. 이완용과 송병준은 공손하지 않은 말씨로 수없이 황제의 낯빛을 어둡게 했다. 이병무는 칼을 빼어들고 황제를 위협했다. 황제는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허락했다. (후략)”

(2)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참여

▶ 『순종실록』, 1907년 10월 25일.

“지시하기를, ‘지금 정사를 새롭게 하는 때에 있어서 내각의 대신들이 충성을 다하

고 의리를 견지한 결과 공적이 현저히 나타났다. 총리대신 훈1등 이완용 대훈(大勳)으로 특별히 올려주고 이화 훈장(李花勳章)을 주며, 학부대신 훈1등 이재곤에게는 특별히 태극 훈장(太極勳章)을 수여하고, 탁지부 대신 훈2등 고영희, 군부대신 훈2등 이병무는 모두 훈1등으로 올려주며, 내부대신 임선준, 법부대신 조중응, 농상공부대신 송병준은 모두 훈1등을 주고 각각 태극 훈장을 수여한다'라고 하였다.”

▶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6일.

“각 대신이 농대 송병준씨 집에 회동하여 비밀히 회의하고 총리대신 이완용씨와 군대 이병무씨가 재작일 [1907년 7월 24일-작성자] 오후 네 시에 예결하여 이십분 동안에 폐현하고 일곱 시에 퇴결하여 다시 회의한 후 십일시에 이총리와 송농대가 재차 폐현하고 십이시에 퇴결하여 즉시 통감 관저로 갔으며 내부 탁지부 법부 군부 학부 각 대신은 통감관저에 먼저 가서 고대하는 중이러니 12시쯤 되어 내 각대신이 다 모이고 일본관인은 장곡천 [하세가와(長谷川)-작성자] 군사령관과 위무대신 임동 [하야시 타다스(林董)-작성자] 씨가 회동하여 일본과 한국의 새 조약을 하였는데 그 조건이 아래와 같으니(후략)”

▶ 『공립신보』, 1907년 12월 6일, 「매국대신이 훈장 타」.

“11월 1일 신내각 7적 대신이 모두 일등훈장을 뒀으니 어심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나라 팔아먹은 공로로 말하면 일본훈장은 가하되 한국훈패는 부당하도다. 그 서훈된 것을 이에 기재하여 세상공론을 듣고자 하노라. 총리대신 이완용은 대훈위이화장, 학부대신 이재곤은 대훈위태극장, 탁지대신 고영희는 훈일등태극장, 군부대신 이병무는 훈일등태극장 (후략)”

▶ 『신한민보』, 1914년 6월 11일, 「의장 리석용 공판」.

“(전략) 재판장이 물기를 5억 7적은 누구를 지목하는 것이냐. 이씨 왈 너희도 알지 못할 리 없으나 내가 말하노라. 5억은 을사년 5조약을 체결한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박제순 다섯 역적을 가리킴이오, 7적은 정미년 7조약을 성립한 이완용, 이병무, 이재익[이재곤 - 작성자], 임선준, 조중응, 고영희, 송병준 7명을 지목함이오, 이 외에 특히 흉이 있으니 경술 합병 시에 재단한 이완용, 이용구 양흉이라. 합

병은 아 대한황제폐하께서 부인하신 바요, 우리 2천만 민족이 부인한 이상 5억 7척 2홍의 간계로 제출함이라”

▶ 『신한민보』, 1915년 9월 2일.

“만에 천을 취한 것도 많지 않은 것은 아니로되 저 일본은 한국권리의 만분의 9천을 점령하였지마는 아직도 쾌족지 못하여 아주 탈취하기로 작정하고 7월 18일 [1907년 - 작성자]에 일본공사 임[하야시 곤스케(林權助) - 작성자] 등이 한국 매국적 등과 더불어 비밀히 의론한 후에 24일에 이완용, 송병준, 이병무 등이 중명전에 들어가서 황제를 폐현하고 창덕궁으로 친가하여 태황제로 더불어 상견치 못하게 한 후에 7조약을 능정하니 한국정권은 온전히 통감의 수중에 들어가고 한국 관리는 모두 일인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3) 한국군대 해산을 주도

▶ 「韓國駐劄軍韓國軍隊解散に關する件」 明治40年(1907) 8月 2日, 『密大日記』 明治40年 (韓國駐劄軍參謀長 牟田敬九郎이 陸軍次官 石本新六에게 보낸 한국군대해산 계획서).

“(전략)경성 각대 해산순서 : 훈련원(한국육군연병장)의 해산 - 1. 군부대신[이병무 - 작성자]은 각 대장을 군사령관 관사에 집합시키고 미리 조칙 등을 비밀히 보여주고 이때 고문 및 교관이 열석한다.(중략) 7. 군부대신[이병무 - 작성자]은 조칙을 전달함과 동시에 다음 항목들을 훈령한다. ; 장교하사졸의 처분법, 하사.상등병 중 巡檢희망자는 원서를 3일 이내에 군부에 제출한다.(후략)”

▶ 「憲兵司令部 韓國軍隊解散に關する報告の件」 明治 40年(1907) 8月 7日, 『密大日記』 明治 40年(憲兵司令官 林忠夫이 陸軍大臣 寺內正毅에게 보낸 한국군대 해산 보고).

“(전략) 2. 군부대신[이병무 - 작성자]은 8월 1일 오전 7시 각 대장(보병은 대대장 이상)을 대관정(장곡천 군사령관 관저)에 소집하여 조칙을 전달하고 또 설명했으며, 각 부대장은 오전 10시까지 그 부하를 훈련원(연병장)에 소집시켜 해산식을 거행하

는 취지를 전달했다(중략) 3. 각 대장의 대부분은 **군부대신**[이병무 - 작성자]의 전달에 의해 처음으로 군대해산의 일을 알게 된 모양이었으나 각 대는 오전 8시에 일동 무사히 귀대했다(후략)”

▶ 『관보』, 1907년 8월 1일 호외.

“**(전략)**이제 군제쇄신을 도모하여 사관양성에 전력하고 후일에 징병법을 발포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하고자 하므로(중략) 황실시위에 필요한 자를 選寔하고 기타는 일시 해산케 하노라. 짐은 너희들 장졸의 그동안 쌓인 노고를 고려하여 특히 그 계급에 따라 恩鎡을 나누어 내리니 너희들 장교 하사 졸은 그 뜻을 잘 체득하여 각자 그 업을 이루는 데 어그러짐이 없도록 하라. 광무11년 7월 31일, 내각총리대신 훈2등 이완용 · 군부대신 훈3등 **이병무**”

▶ 『관보』, 1907년 9월 2일.

“군제가 이미 개정되었으므로 무관 중 황족 외에 현재 보직이 없는 인원 중 장성, 영관, 위관 등을 해직하노라. 융희 원년 8월 30일, 내각총리대신 훈2등 이완용 · 군부대신 훈3등 **이병무**”



▶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3일.

“**군부대신**[이병무 - 작성자]은 각 대장에게 명령하여 탄약을 조사한 후에 간수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병정의 가지고 다니는 탄약도 다 거두어갔다더라.”

▶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3일.

“군대 **이병무**씨가 군대를 해산한 일에 대하여 큰 사업을 한 줄로 누구다리 말하여 가로되 군대를 설시한 이후로 국사에 조금도 이익은 없고 국고금만 손해를 하였은즉 이번에 해산한 일이 당연타 하였다니 자기는 대신한 이후로 국사에 무슨 이익이 되었나뇨 인민을 사상케한 사업인가 소위 재 허물은 제가 모르고 남을 책망함은 밝게 하는 격이로고.”

▶ 『신한민보』, 1915년 9월 2일.

“이완용, 이병무 양적이 일본대장 장곡천[하세가와 조선주둔군 사령관 - 작성자]의 명을 받아가지고 창덕궁에 이르러 황제로 하여금 군대해산령을 내리게 하였으나 만일 그 조서를 읽는 날이면 큰 변이 일어날 생각이 없지 않은지라. 그런 고로 이등은 이 조서를 군중에게 낭독하기 전에 먼저 변란을 진압할 계획을 연구하여 그 방침은 한국 중에 있는 탄환을 거두는 것이 제일 양책이라 하여 이에 각 군영에 전령하여 탄환을 거두매 군인들은 분울한 생각이 없지 아니하여 혹 장관을 죽이고 자 하는 자도 있으며 혹 군기를 띠고 도망하는 자도 있으며 반란이 더욱 심할 염려가 없지 않은지라. 그런 고로 이등 장곡천 양인이 서로 모계를 내어 한국 군인으로 하여금 군기를 가지지 않고 훈련원에 모여 무슨 일을 의론한다 하고 이에 일병으로 하여금 한국 군영에 이르러 군물을 점령케 하니 그날은 곧 융희원년 8월 1일 이라(후략)”

▶ 『동아일보』, 1926년 12월 13일.

“군대해산식은 8월 1일 오전 8시에 훈련원에서 거행되었다. 모든 것을 비밀리에 준비하여 두었던 군부대신 이병무는 그날 오전 7시에 장곡천 군사령관의 집인 대관정으로 각 대대장 이상을 소집하여 7월 31일 밤에 발표된 조칙을 전하고 대장들로 하여금 각대에 돌아가서 불온한 행동이 없도록 훈유하여 훈련원으로 집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명령을 받은 대장들은 자기 영문으로 돌아가서 부하장졸을 정전에 모아놓고 조칙을 전한 후 장차 해산식을 거행하려 훈련원으로 인솔하여가려할 즈음에 일본군대는 그 틈에 벌써營舍에 두었던 무기를 전부 창고에 장악하고 말았는데 대장의 명령으로 나열하였다가 조칙의 전달을 듣고 비로소 전후의 사실을 깨달은 사졸들은 망연자실하여 아연분기하였으나 그들이 찾는 생명같은 총검은 두었던 곳에 있지 않았다(중략) 군대를 해산시키는 군부대신[이병무 - 작성자]은 그래도 가슴에는 찬란한 태극장을 차고 긴 칼을 줄줄 끌며 일본군인의 엄호를 받으며 중앙에 나서서 조칙을 낭독하고 훈시를 주려할 즈음에(후략)”

▶ 黑龍會 編, 『日韓合邦秘史』 上, 1930년, 334~335쪽.

“군대해산은 신협약을 정할 때 이미 결정했던 것으로서, 伊藤통감이 협약 발표 다음날의 담화 중에 미발표로 결정해두었던 附屬書는 곧 주로 이 군대해산을 지시한

것이였다. 이완용은 이 勅旨를 받자 곧 伊藤통감과 의논하여 해산군대가 폭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즉시 일본군대에 의해 이를 진압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8월 1일 이른 아침 왜성대에는 대포의 대열로 진을 치고 훈련원(연병장) 주위에는 군대를 배치하여 전투준비를 갖추는 한편, 군부대신 이병무는 오전 7시를 기해 대관정에 각 대장을 소집하여 해산의 조칙을 전하고 8시에 각대를 훈련원으로 소집하도록 명하였다(후략)”

2)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여

▶ 「韓國併合始末ノ件」, 明治43년(1910) 11월 21일, 『公文雜纂』 第十九卷, 明治43년 (朝鮮總督 子爵 寺內正毅가 內閣總理大臣 侯爵 桂太郎에게 보내는 보고서).

“(전략)20일[1910년 8월 20일-작성자] 이완용은 다시 승녕부총관 조민회를 불러 태황제의 최근 언동을 묻고 곧 실행될 시국해결에 관해 그 주의를 촉구하여 제반의 결정을 완료했다. 또 조민회를 통해 친위부장관 이병무에게 어전회의[1910년 8월 22일-작성자]의 내용을 보이고 이에 동의시키고(후략)”

▶ 朝鮮總督府, 『朝鮮ノ保護及併合』, 朝鮮總督府, 1918년(龍溪書舍, 1995년), 332쪽.
“(전략)한국 황제폐하는 즉일[1910년 8월 22일-작성자] 오후 1시를 기해 국무대신 이하 홍왕 이재면, 중추원 의장 김윤식, 시종무관장 이병무, 민 공상, 윤 시종원경 등을 불러 조칙을 이 총리에게 주었다. (후략)”

▶ 『대한매일신보』, 1910년 8월 26일, 「중요문대」.

“지난 22일에 일본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 한국에 관한 문제가 발표되었다 하며 일전에 이총리가 이번 중요문제에 대하여 내각의 의향을 보고함과 통감의 지휘를 준행하기로 하고 이총리 이하 박 내대와 고 탁대와 조 농대가 일제히 내각으로 들어가서 각의를 설행하고 어전에 상주하였는데 흥친왕된 이재면씨와 중추원 의장 김윤식과 궁내대신 민병석과 친위부장관 이병무와 시종원경 윤덕영과 기타 각 대신들은 (중략) 반대하는 자가 없음으로 즉시 가결된 후에 (중략) 이 총리와 박 내부대신과 고 탁지부 대신과 이 학부대신은 그 안전을 결정한 후에 각기 자기의 집

에서 문을 닫고 손을 보지 아니한다는데(후략)”

▶ 『신한민보』, 1910년 9월 21일, 「賣國奴聚首名錄」.

“8월 16일 매국적 이완용이 통감부에 나가 사내 [테라우치(寺內)-작성자] 의 충노(忠奴) 되기를 맹세하고 22일에 황제를 협박하여 형식상 어전회의를 열었는데, 모인 자는 총리 이완용, 황족대표 이재면, 궁대 민병석, 원로대표 김윤식, 내대 박제순, 시종경 윤덕영, 농대 조중응, 친위장관 이병무, 탁대 고영희 이상 9적이라. 이완용이 이에 寺內의 요구하는 조건을 내어 놓으매 좌중이 묵묵불언하고 한 놈도 반대함이 없는 고로 완용은 이를 가결이라 하고 곧 황제를 협박하여 어압(御押)케 하고 당시 조중응을 데리고 마차를 몰아 통감에게 가져다 바치니 사내는 즉시 동경으로 전보하여 추밀원회의에 제출하였다더라.”

▶ 釋尾春菴 著, 『朝鮮併合史』, 朝鮮及滿洲社, 1926년, 560쪽.

“(전략)[1910년 8월-작성자] 22일 오후 한국병합조약에 대한 한국의 어전회의가 열렸고, 이 어전회의에는 한국 내각의 모든 대신을 비롯하여 황족 수반인 이희 전하, 원로 대표자로서 중추원 의장 김윤식 및 시종무관장 이병무도 그 자리에 열석했고, 각신은 모두 일한병합조약 체결의 마지못한 형세를 말하고(후략)”

3. <특별법> 제2조 7호(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자작 수작

▶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12일.

“明治 四十三年 十月 七日 依朝鮮貴族令授子爵 勳一等 李秉武”

▶ 『매일신보』, 1910년 10월 8일, 「授爵榮式」.

“朝鮮貴族令에 依하여 御詔書를 所原 宗秩寮 主事와 蜂須賀 式部武官이 奉持하고 再昨夜에 入京하였는데 寺內 總독은 再昨日에 右聖旨에 對하여 授작의 光榮을 荷

할 朝鮮 元老大官 功勳者에게 各各 通報한 故로 昨日 午前 十時 三十分에 前 親衛 府 長官 李秉武氏는 舊韓國 陸軍 副將의 武裝을 服하고 總독府에 先登하니 燦爛 한 金光을 四邊에 拂拂하여 意氣가 揚揚히 第一등으로 玄關에 車轅을 橫着하고 (중략) 各自 輝韻하는 喜悅은 一場 可觀을 呈하였다더라.”

▶ 『매일신보』, 1911년 2월 23일, 「爵記本書奉授式」.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山縣 正무총감은 칙명을 받들고 어제 22일 오전 11시부터 총독관저에서 (중략) 조선귀족 후작 이재완 이하 60여 명에게 대하여 작기 본서 봉 수식을 거행하였는데, 각 귀족의 3분의 2는 모두 新製 大례복을 입고 기타는 연미 복을 입은지라. 정오 12시에 식을 종료하였고 수여식에 참여한 자의 씨명은 좌와 같더라 (중략) 훈1등 자작 이병무 (후략)”

▶ 일본내각, 『관보』, 1910년 10월 8일; 『조선귀족약력』, 84쪽; 『조선귀족이력서』, 16쪽; 『신한민보』, 1910년 9월 21일; 『순종실록』, 1910년 10월 7일.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을 수여받음.

【참고사항】 작위 세습

- 출전: 『朝鮮貴族略歷』, 『齋藤實文書』 100.4, 1929, 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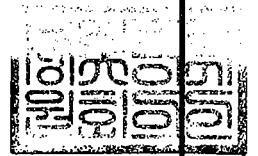
1927년 3월 1일 양자 李鴻默 습작.

4. <특별법> 제2조 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은사공채 수령

▶ 『매일신보』, 1911년 1월 14일, 「公債本券交付」.

“優渥한 聖旨에 基하여 하사하신 귀족 班族의 은사공채권은 어제 총독부에서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차례로 교부하였는데, 많은 수의 인원에게 일시에 교부하기 어려우므로 오전 오후 두 번에 나누어 山縣 정무총감이 國分 인사국장과 藤波 통역관을 대동하고 총감실에 설치한 교부장소에서 직접 교부할 때 수령자는 별실에서 수령증을 쓰고 물러나온지라. 오전에 교부받은 자는 45명이나 (중략) 동[자작 - 작성자] 이병무 (중략) 오후 2시에 각기 수령을 끝마치고 모두 물러갔더라”

▶ 「朝鮮人に對する授爵に關する意見」, 『齋藤實文書』, 1926년.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로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수작과 함께 50,000원의 은사공채를 수령하였음.

2)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서훈 및 서위

▶ 「韓國禮式院副卿金奎熙外七名敍勳ノ件」, 『서훈』 권2, 外國人, 1906년; 『대한제국 관원이력서』 2, 464, 755쪽; 『조선귀족이력서』, 16쪽; 『조선귀족열전』 124쪽; 『조선귀족약력』, 83쪽.

1906년 3월 1일 일본 정부로부터 勳二等 瑞寶章을 받음.

▶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5쪽; 『조선귀족이력서』, 16쪽; 『조선귀족약력』, 84쪽.

1907년 10월 18일 일본정부로부터 勳一等 旭日章을 받음.

▶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12월 12일; 『조선귀족이력서』, 16쪽.

1912년 12월 7일 일본정부에 의해 從四位에 서위됨.

▶ 「陸軍歩兵大尉正七位勳五等功五級山田伊三郎外八百二十五名へ韓國併合記念章授與ノ件」, 대정2년(1913) 3월 29일, 『韓國併合記念章裁可書』 2권; 일본내각, 관보, 1913년 4월 22일 부록.

1912년 8월 1일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 『조선총독부관보』, 1926년 12월 15일.

1926년 12월 8일 일본정부로부터 旭日桐花大綬章을 받음.

【참고사항①】 특별상여금 수령

- 출전: 『朝鮮將校副將男爵趙東潤外三十七名同上(各官廳高等官賞与ノ件[遞信省府縣])』, 『公文雜纂』大正三年 第八卷 內閣八 (各官廳高等官賞与二附手当).

<朝鮮將校年末賞與ノ件申請> (육군대신 岡市之助이 내각총리대신 백작 大隈重信에게 보내는 서한, 대정3년(1914) 12월 26일)

"별지에 기재한 조선장교는 구한국장교 중 우수자를 발탁하여 조선주차군사령부, 조선주차헌병대, 조선보병대에 배속되어 금일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이들 장교는 대부분 진급할 가망이 없고 또 봉급에 1,2,3등의 구분이 있다 할지라도 진급자가 아니면 자연 승급의 희망이 적어 전혀 하등 장려할 길이 없으므로 이 기회에 직무에 열심히 힘쓴 점에 대해 각 첫머리의 금액을 상여금으로 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 경비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朝鮮部隊費로써 충당하는 것으로 조선총독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12월 28일

금 50원 부장 남작 조동윤

금 180원 부장 자작 이병무

금 290원 참장 이회두(후략) "



【참고사항②】 대한제국정부로부터 받은 훈포상

- 출전: 『관보』, 1906년 1월 22일; 『고종실록』, 1906년 1월 15일.

1906년 1월 15일 대한제국정부로부터 勳三等 八卦章을 받음.

- 출전: 『관보』, 1907년 10월 2일;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55쪽; 『황성신보』, 1907년 10월 3일.

1907년 9월 28일 겸임시종무관장 군부대신 훈3등 이병무는 대한제국정부로부터 勳二等 太極章을 받음.

- 출전: 『관보』, 1907년 11월 2일; 『황성신문』, 1907년 11월 3일.

1907년 10월 30일 군부대신 훈2등 이병무는 대한제국정부로부터 勳一等 太極章으로 陞敍됨.

- 출전: 『관보』, 1910년 8월 29일 부록; 『순종실록』, 1910년 8월 26일; 『조선귀족이력서』, 16쪽; 『조선귀족약력』, 84쪽.

1910년 8월 26일 대한제국정부로부터 大勳 李花大綬章을 받음.



1. 이병무는 1907년 이완용내각의 군부대신 겸 시종무관장으로서, 헤이그밀사사건이 일어나자 고영희, 송병준, 이완용, 이재곤, 임선준, 조중응 등과 함께 고종의 퇴위를 강요하고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참여함으로써 7적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그는 군부대신으로서 고종의 강제퇴위 시 일본군의 입궐을 주선하고, 일본이 조선의 군권을 예속시키기 위한 최종적 실행방책으로서 구 한국군을 해산할 때 이에 적극 협력하였다. 이어 1910년 당시 친위부장관으로서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동의함으로써 국권을 일본에 넘기는 데 협력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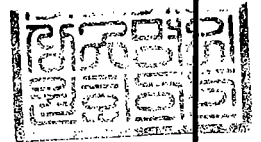
2.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해산된 군인도 일부 결합하여 전국적으로 전개된 의병전쟁에 대해 이병무가 일본군과 협력하여 이를 진압하도록 지휘한 행위(특별법) 제2조 제1호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이병무가 한일합병의 공으로 1910년 10월 7일 일본정부로부터 자작을 수여받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이병무는 1907년 한일신협약 체결과정에서 조약에 찬동한 대가로서 1907년 10월 18일 일본정부로부터 훈1등욱일장을 받았고, 또 1910년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로 일본정부로부터 5만원의 은사공채를 수령했으며, 1912년에는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또한 1915년 다이쇼[大正] 천황의 즉위식에 참석한 공을 인정받아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그가 죽은 후 1926년 12월 8일 일본정부로부터 욱일동화대수장이 추서되었다. 이 같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의 조사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병무는 1907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체결과 한국 군대해산, 한일병합조약 체결 과정에서 적극 일제에 협력하여 그 공적으로 일본정부로부터 자작의 작위와 은사금을 수여받았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았다. 또한 군대해산 이후 전국적으로 폭발한 의병전쟁 진압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일본군과 협력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병무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1호, 6호, 7호, 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 월 12 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